

■ 인지세 안내

「인지세법」제 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 3조에 의거하여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(전매)계약서는 인지세법상 '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'로 과세 대상입니다.

■ 인지세 과세대상과 납부 기한·방법(※인지세법 제1조,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6조)

과세 대상	- 부동산 계약서 / 분양권 전매계약서 ※ 관련법령 : 인지세법 1조, 제3조 제1항 제1호, 제8조
납부 기한	- 분양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
납부 방법	- 수입인지 사이트(www.e-revenuestamp.or.kr)에서 구입 -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전자 수입인지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, 보관

■ 인지세 과세 문서 및 세액

과세 문서	세 액	수입 인지 금액	해당 여부
아파트 공급 계약서	1천만원 초과 ~ 3천만원 이하	2만원	X
	3천만원 초과 ~ 5천만원 이하	4만원	X
	1억원 초과~10억원 이하	15만원	전 타입
	10억 초과	35만원	X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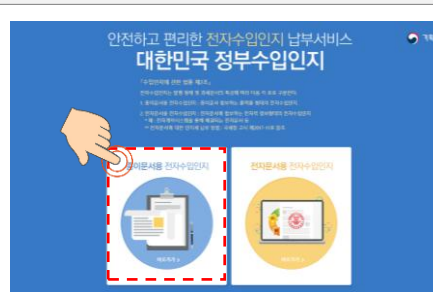
■ 인지세 부담 금액

구분	전 타입
공급계약서(연대 납부)	7.5만원 (사업주, 계약자 각각 부담)

※ 공급계약 시 7.5만원에 해당하는 수입인지를 발급 받아 사업주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전자수입인지 구매 방법 안내

①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



②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로그인 후 구매



② 납부 정보 입력



용도	과세문서종류	금액	건수
인지세납부	1. 부동산 등 소유	7만5천원	1

④ 납부 및 출력

